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규제개혁으로 연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규제개혁으로 연다!”



목차

I. 농업경쟁력 강화

1. 농업의 규모화·전문화

- 1) 들녘경영체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 08
- 2)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산지이용규제 완화 09

2. 농업투자 확대 및 비용절감

- 3) 농업법인 등의 투자유치 제약 규제개선 10
- 4) 발전소 온배수의 농업 난방용 활용지원 11





II.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1. 농산물 유통 효율화

- | | |
|----------------------------|----|
| 5) 도매시장 규제완화를 통한 유통 효율화 유도 | 14 |
| 6)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실효성 제고 | 15 |
| 7) 인삼에 대한 표시제도 및 인증기준 개선 | 16 |

2. 식품·가공산업 육성

- | | |
|------------------------------|----|
| 8) 곤충의 식품원료 인정 확대 | 17 |
| 9) 간이 도계장 시설 기준 완화 | 18 |
| 10) 양계농가의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 개선 | 19 |
| 11) 홍삼 가공방법 규제개선 | 20 |
| 12) 농가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 21 |
| 13) 막걸리(탁주) 판매용기 용량 제한 완화 | 22 |
| 14)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 | 23 |

3. 농촌관광 활성화

- | | |
|-----------------------------------|----|
| 15) 농업법인의 농촌관광사업 참여허용 | 24 |
| 16) 농촌민박 조식허용 및 농촌관광·휴양사업 시설기준 완화 | 25 |
| 17) 승마산업 규제개선 | 26 |

4. 산업간 융·복합 촉진

- | | |
|---------------------------------------|----|
| 18) 6차산업 발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정 제도 도입 | 27 |
| 19)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합리화 | 28 |
| 20) 도시지역 등에서 농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 규제완화 | 29 |

III.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 활성화

- | | |
|----------------------------------|----|
| 21) 귀농·귀촌자의 경제활동 자금지원 규제 합리화 | 32 |
| 22) 농촌주택건축 입지규제 완화 및 자금지원 확대 | 33 |
| 23) 농촌주택단지조성 참여제한 완화 | 34 |
| 24) 고령농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 등 규제완화 | 35 |

|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규제개혁으로 연다!

추진배경

우리 농업·농촌이 제 역할을 다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세·고령농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규모화·전문화, 과학기술의 접목,** 그리고 **6차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 현황

개방화·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 활기찬 농업·희망찬 농촌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을 수립, 농가 유형별 맞춤형 육성 정책을 추진 중

전업농:경쟁력, 틈새경영체

중소농:농외소득, 6차산업

고령농:사회안전망

핵심 이슈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기술, 자본,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필요**

농정 패러다임 전환 농식품 규제혁신

경 영

규모화 및 조직화

기 술

기술 융·복합 및
첨단농업화

소 득

6차 산업화 촉진





기본방향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 ① 규모화와 과학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②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6차산업화, ③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효율성 제고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 신 성장동력 확충

농산업 경쟁력 강화

농업의 6차산업화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활성화

- 규모화·전문화 촉진
- 첨단과학기술 활용 및 비용절감
- 농업투자 확대 및 농지이용 효율화

- 농산물 유통 효율화
- 식품가공산업 육성
- 농촌관광 활성화
- 산업간 융·복합 촉진

- 귀농·귀촌인 조기정착 저해규제 개선
-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주요과제



I. 농업경쟁력 강화

1. 농업의 규모화 · 전문화

- 1) 들녘경영체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
- 2)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산지이용규제 완화

2. 농업투자 확대 및 비용절감

- 3) 농업법인 등의 투자유치 제약 규제개선
- 4) 발전소 온배수의 농업 난방용 활용지원



1

들녘경영체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

개선내용

▶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경영하는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해 들녘경영체를 운영하는 영농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선정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보조지원하는 시설·장비도 확대하였습니다.

- 들녘경영체 운영 영농법인 직불금 지급 상한면적 :



- 들녘경영체 선정요건 : 50ha이상 집단화된 경작지 인정
⇒ 경작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영농이 가능한 경우 인정
- 지원 시설·장비 종류 : 3종(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만 지원
⇒ 공동영농장비 중 들녘경영체가 선택하는 장비는 모두 지원

기대효과

▶ 들녘경영체를 통한 규모화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 공동경영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및 품목·재배방법 통일 등으로 품질향상
- 공동영농으로 절감된 노동력을 활용하여 타작물 재배, 6차 산업화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
- 농기계의 공동 이용을 통한 효율적 활용으로 과잉보유 방지 및 신규 구입비용 절감

농담(農談) 특특(talk talk)

기존에는 182ha의 농지를 131농가가 개별경작하였으나, 법인이 공동 육묘·방제, 농기계 공동 이용 등 공동경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였고, 경종 + 축산(한우 700마리) + 직판장 운영 + 학교 체험학습 등 6차산업 추진으로 들녘경영체 운영효과 극대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 경남 산청 영실영농조합법인('09년 들녘경영체 구성)

2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산지이용규제 완화 (산림청 협업)

개선내용

- ▶ 산지의 51%를 차지하는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을 위한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신고제로 바꾸었으며, 방목허용면적도 크게 확대(3ha→5ha)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용도별 산지 면적 현황(641만ha) 〉

준보전산지 147만ha(23%)	보전산지 494만ha(77%)	
	임업용 329만ha(51%) 보존 국유림, 채종림, 임업진흥권역 등	공익용 165만ha(26%) 그린벨트공원,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등
가축방목허용 476만ha(74%)		

기대효과

- ▶ 친환경 축산이 확대되고 산야초를 사료로 활용함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및 산지생태 축산농장을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
 - 산지생태 축산농가(소, 흑염소)의 가축 사육비는 기존 축산농가의 절반수준에 불과

농담(農談) 특특(talk talk)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아들 내외와 함께 3대째 충주에서 30년 이상 밤나무 농사를 짓고 있는 K씨는 부단한 노력과 정성을 들여 매년 30여톤의 밤을 생산하여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K씨는 밤나무 재배지에서 닭을 방사하여 토양도 개량하고 소득도 다양화하고자 소규모로 닭을 방사하여 사육하고 있지만, 산지이용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닭의 방사면적을 늘려 봄에는 산채를 채취, 여름에는 육계용 닭 출하, 가을에는 밤 수확, 겨울에는 계란을 얻어 연중 소득을 올리는 등 농업경영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충주 밤나무 농사하는 K씨

3

농업법인 등의 투자유치 제약 규제개선

개선내용

-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법인간 합병·분할의 법적근거가 없고, 조합원의 무한 책임 부담으로 경영효율화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농조합법인의 합병·분할을 허용하고, 조합원의 책임범위도 출자액 범위 내로 조정하였습니다.

- 영농조합법인 간 합병·분할 :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분할 가능
- 영농조합법인이 조직 변경 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형 확대 :
합명·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 : 무한책임 ⇒ 출자액 내 유한책임

기대효과

- ▶ 법인 경영체의 구조조정·규모화 촉진 및 외부자본의 투자위험 경감을 통한 투자촉진

- 농업회사법인(유한·주식)으로의 조직 변경 및 영농조합법인간 합병·분할 등 조직 운용의 유연성을 통해 효율적 경영
- 법인 채무에 대해 조합원의 부담이 완화되어 신규 조합원 모집 및 대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

농담(農談) 토크(talk talk)

농업인·비농업인 출자를 통한 대규모 경영체 육성을 위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규제로 인해 대다수 조합법인경영체가 영세한 실정입니다. 경북 상주 해도지영농조합법인은 법인의 영세성을 탈피하고자 지역내 유사 영농조합법인의 합병을 통해 규모화를 추진하였습니다만, 현행 제도로는 합병을 위해서는 기존 법인 해산 후 다시 설립해야 함에 따라 합병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전남 해남 참다래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해 제금융권의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은행은 법인조합원의 무한책임에 따른 투자자의 기피로 법인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법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을 시도하였지만, 해산 후 신규법인 설립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기회비용(협력중단, 부채상환, 세금비용 등)이 과중하여 포기한 바 있습니다.

금번 농업법인 등의 투자유치제약 규제개선으로 농업법인의 규모화·전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발전소 온배수의 농업 난방용 활용지원

개선내용

- ▶ 대부분 바다로 버려지던 발전소 온배수(수열) 등을 시설원에 농가 등의 난방열원으로 활용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농업에너지이용효율사업으로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재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 지원한도 : 1ha 당 12.5억원
 - 재원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20%), 자부담(10%)

기대효과

- ▶ 시설원에 등의 농업용 난방에너지 및 시설 설치 비용 절감
 - 남제주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인근 애플망고, 감귤농장 0.7ha에 공급하여 기존 경우대비 연간 86% 난방비 절감(연 1.3억원)
 - 설치비가 지열난방 시설에 비해 저렴
 - ※ 1ha당 설치비 : 지열 냉난방시설 14억원 / 발전소 온배수 12.5억원(ha당 1.5억원 절감)

농담(農談) 토크(talk talk)

발전소 온배수는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식히는데 사용되는 물로써, 활용율은 연간 발생량 320억 톤의 0.48%에 불과하고 대부분 바다로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발전소 온배수 활용 시설 설치비는 지열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냉난방 시설에 비해 저렴합니다만, 그 동안 농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농가가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큰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발전소 온배수 및 소각장 폐열 재이용 시설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재이용이 활성화되면 에너지 비용절감 및 농업의 생산성·품질향상이 기대되며, FTA 등 농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1. 농산물 유통 효율화

- 5) 도매시장 규제완화를 통한 유통 효율화 유도
- 6)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실효성 제고
- 7) 인삼에 대한 표시제도 및 인증기준 개선

2. 식품·가공산업 육성

- 8) 곤충의 식품원료 인정 확대
- 9) 간이도계장 시설 기준 완화
- 10) 양계농가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개선
- 11) 홍삼 가공방법 규제개선
- 12) 농가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 13) 막걸리(탁주) 판매용기 용량 제한 완화
- 14)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

3. 농촌관광 활성화

- 15) 농업법인의 농촌관광사업 참여허용
- 16) 농촌민박 조식허용 및 농촌관광·휴양사업 시설기준 완화
- 17) 승마산업 규제개선

4. 산업간 융·복합 촉진

- 18) 6차산업 발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정 제도 도입
- 19)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합리화
- 20) 도시지역 등에서 농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 규제완화



5

도매시장 규제완화를 통한 유통 효율화 유도

개선내용

➤ 경매중심의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 매매를 활성화하고자 시장사용료 등을 인하 하고, 중도매인 간 거래를 연간 거래액의 20%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 정가·수의매매 :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하는(수의)방식

□ 정가·수의매매 거래시 시장사용료 인하

□ 저온창고 사용료 감면



기대효과

➤ 도매시장내 거래방식이 다양화 되어 농산물 가격과 수급이 안정화되고, 중도매인간 거래허용으로 도매시장 이용 소매점의 one-stop 쇼핑이 가능하여 도매시장의 수집·분산기능 강화

□ 정가·수의매매 비율 확대('13 : 9.9% → '16 : 20%)로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

※ 경매는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당일 도매시장에 유입되는 농산물 양의 증감에 따라 가격의 진폭이 좌우되고, 경매후 물량 분산 과정에서 상·하차비 등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단점

□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으로 다양한 품목군(群) 확보가 필요한 전통시장, 중소마트, 식당 등의 다수의 중도매인을 접촉해야 하는 불편해소

※ 중도매인은 대개 소수(小數)의 품목만을 취급하므로 중도매인간 거래 불허시 전통시장, 중소마트 등에서는 품목확보를 위해 다수의 중도매인을 접촉해야하는 불편

농담(農談) 특특(talk talk)

(정가·수의매매 거래수수료 절감) 시장사용료 약 7천만원/년, 저온창고 사용료 약 2천만원/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당 법인의 13년도 정가수의매매 거래금액 및 물량, 전체 거래물량 등을 토대로 추정

(중도매인간 거래허용)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으로 상장거래액이 약 6,700억원/년이 증액되어 추가 농산물 수요 확대를 기대합니다.

※ 중도매인간 거래 한도액 만큼 농산물 거래액이 증가한 것으로 가정

(13년 가락도매시장 상장거래액 33,810억원 × 20% = 6,762억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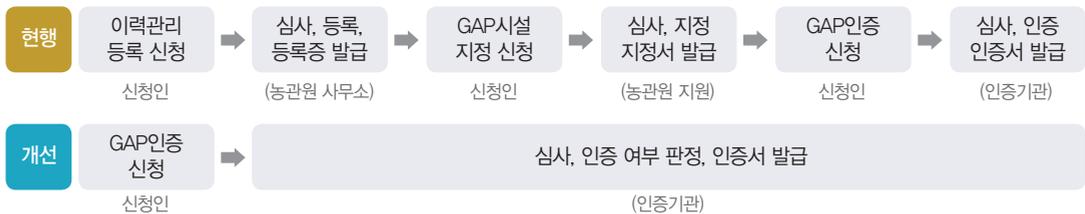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실효성 제고

개선내용

➤ 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의 인증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습니다.
(구비서류 감축 : 12종 → 3종, 인증기간 단축 : 최대 126일 → 42일)

- 농업인이 GAP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관련기관을 3차례 방문 → 한번만 인증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하도록 단순화

〈 GAP 인증절차 개선 모식도 〉



- GAP시설 인증 의무 경우 규정 폐지로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 농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업인이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인증시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도입

기대효과

➤ 인증절차 간소화 및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GAP 제도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확대되고, 이에따라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경쟁력 제고효과 기대



※ GAP 재배면적은 전체 농경지 1,711천ha의 3.5%(59천ha)에 불과한 실정(14.6원)

농담(農談) 토크톡(talk talk)

기존에 농가에서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력추적등록, GAP시설 지정, 인증심사를 3개 기관에 각각 신청하던 것을 한번만 신청하면 되도록 단순화하였고, 1농가당 최소 30만원의 비용 절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에 따라 GAP제도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국산농산물의 안전성이 제고되어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서류 작성과 현장심사 입회에 따른 비용 10만원(일당)

* GAP시설 지정 시설 경우 비용 10만원(10농가당)

* 시설 현장심사 입회에 따른 비용 10만원(일당)

7

인삼에 대한 표시제도 및 인증기준 개선

개선내용

- ▶ 국내산 인삼은 법에서 정한 품질검사를 통과하면 ‘고려(高麗)’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고려(高麗)’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단체에 지리적표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개선

품질이 검증(검사 통과)된 국내산 인삼은 지리적표시 등록 없이 ‘고려(高麗)’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규제 완화

- 인증을 받기 위한 경영관련 기록 시점을 “파종일 이후부터”에서 “파종일 또는 예정지관리 시부터”로 개선

기대효과

- ▶ ‘고려’ 용어표시 등록비용 절감 및 인삼농가의 유기농인증 불편해소



농담(農談) 특특(talk talk)

다른 품목의 경우 지리적표시등록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생산된 지역명칭은 사용이 가능하나, 인삼류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제조되었더라도 「인삼산업법」에 따라 지리적표시단체(고려인삼연합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고려(高麗)’라는 용어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관련규정 개선으로 국내 500여 인삼류 제조업체가 ‘고려(高麗)’라는 용어 사용을 위해 지리적 표시등록단체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 불편 및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곤충의 식품원료 인정 확대 (식약처 협업)

개선내용

➤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곤충을 확대(3종 → 5종)하였으며, 앞으로도 식약처, 농진청 등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식용곤충 : 기존 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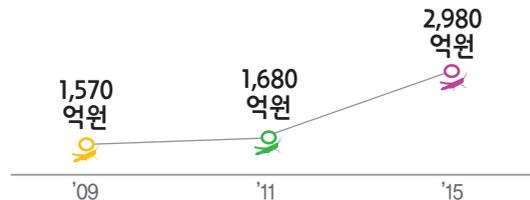
갈색거저리('14.7.15 등록), 흰점박이꽃무지('14.9.30 등록) ※ 한시적 식품원료로 추가

□ 식약처는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된 부작용이 없는 원료의 경우 독성시험 면제 등 인정절차 및 검사항목을 간소화함('14. 8월)

기대효과

➤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곤충이 점차 확대 됨에 따라 식용곤충을 원료로 하는 새로운 식품시장과 곤충시장 활성화

□ 곤충산업 규모 :



□ 곤충요리 경연대회('14.11.27)에 15,000명이 관람하고, 3,500명이 시식·체험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 식품원료 사용 가능 식용곤충 관련 TV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4편)을 통하여 식용곤충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농담(農談) 특특(talk talk)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해충이라는 이미지로 인하여 식품원료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제품의 판매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에 갈색거저리와 흰점박이 꽃무지 곤충 등을 추가로 식품원료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곤충 식품원료 사용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에도 앞장설 것을 지난 9.3일 규제장관 회의시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등록되어 있던 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에 추가로 갈색거저리('14.7월)와 흰점박이 꽃무지('14.9월)를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등 7종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이 새로운 식품 시장을 창출하고 농가에도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한국곤충산업협회장 백유현

9 간이 도계장 시설 기준 완화 (식약처 협업)

개선내용

- ▶ 도계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간이 도계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도계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양계농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기존

도계장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개선

허가관청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 생체중량 2.3kg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수 이하로 도축하는 경우
- 도계장 작업실의 구획, 출입문 자동화 외부차단시설 등의 기준 완화
- ※ 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물뿌림시설 등

기대효과

- ▶ 소규모 양계농가의 도계편의 도모 및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불법도축이 방지됨으로써 도축양계의 위생관리에 유리

농담(農談) 특특(talk talk)

산지(2ha)를 활용하여 토종닭(1,000수)을 사육하고 있으나, 충주 관내에는 도계장이 없어 그동안 도계장이 있는 타지역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여 이용하였으나, 충주 관내 간이 도계장이 신설됨에 따라 이동시간과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 충북 충주 보니숲밤농장

10 양계농가의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 개선 (식약처 협업)

개선내용

▶ 양계농가가 계란을 직접 소매 판매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시 근린생활시설 갖출 것을 요구하여 불필요한 비용 소요
⇒ 관련법 유권해석을 통해 양계농가는 근린생활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

*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소매점, 음식점 같은 시설물(건축법시행령)

기대효과

▶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시 근린생활시설 (화재예방시설, 정화조 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됨에 따른 비용절감

- 농가당 평균 2천만원 절감

▶ 양계농가가 신고만으로도 계란을 직접 소매판매 할 수 있게 되어 소득증대에 기여



농담(農談) 토크톡(talk talk)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조건을 요구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고, 도심 인근지역에 별도 계란 보관창고를 임대해서 계란을 판매하였습니다.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 개선에 따라 자신의 농장에서 직접 계란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건물 임대료와 이동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양계농가 소득증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경기 용인 00양계농장

11

홍삼 가공방법 규제 개선

개선내용

➤ 홍삼의 등급에 따른 가공방식 규제를 폐지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1~3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등급 홍삼은 습점·압착 제조(가습으로 네모형태로 만드는 공정)를 금지하던 규제를 폐지

기존

등의 등급 홍삼은 습점·압착 제조를 금지하여 날개 포장만 가능



개선

등의 등급 홍삼도 날개 포장 + 캔포장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 ※ 등급이외 홍삼은 전체 뿌리홍삼 생산(416톤, '13년)의 28%(800억원)를 차지
- ※ 1인당 홍삼소비량은 증가추세 : ('95) 0.23kg → ('00) 0.23kg → ('05) 0.28kg → ('12) 0.46kg

기대효과

➤ 홍삼 가공 방법을 가공업체가 선택하도록 하여 향후 인삼류 제조업체의 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수출 활성화에 기여

- 제조업체의 매출액이 20% 상승할 것으로 추정



농담(農談) 특특(talk talk)

홍삼 중 30% 이상이 등의 등급 홍삼이나 습점·압착 제조가 금지되어 유통 중 파손품이 생겨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습점·압착 제조 금지 규정이 폐지되고 다양한 홍삼 가공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인삼류 판매 및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농가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식약처 협업)

개선내용

▶ 자본이 부족한 농가라도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을 손쉽게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 소규모 자본을 가진 농가가 식품위생법령의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지자체는 조례·규칙을 통해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문성 부족 및 규제완화시 책임소재 우려 등으로 소극적
- 농식품부-식약처 협업으로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을 완화한 표준조례 규칙(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보급('15.9월)하여 지자체 조례 등 제정 확대 유도

〈조례·규칙 제정 시·군 수〉



기대효과

▶ 농가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식품가공업 창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 ※ 농산물가공 작업장의 평균 면적(132㎡) 기준시 농가는 약 2천만원 수준의 시설 설치비용 경감 (작업장 칸막이 설치비, 지하수 개발비 등)

농담(農談) 토크톡(talk talk)

- 표준조례·규칙(안) 주요 내용 -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농산물 등 식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작업장내 원료처리실, 제조공실, 포장실 등 각각 시설은 분리·구획 → 제조공정 특성에 따라 분리·구획·구분 중 선택하도록 개선
 ※ (분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방을 분리하는 것(구획) 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것, (구분) 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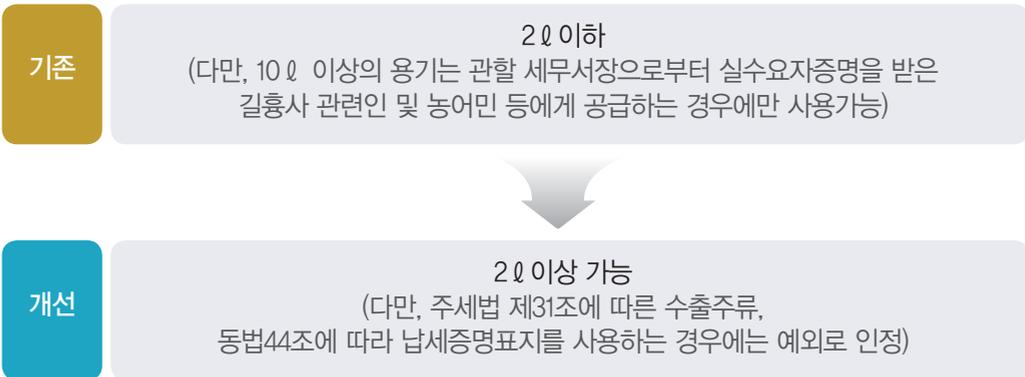
제조 공정 특성에 따라 작업장 바닥, 내벽, 천장 내수성 설비 예외 인정

수돗물, 지하수 공급시설외 식수용 탱크도 급수시설로 이용 가능

13 맥걸리(탁주) 판매용기 용량 제한 완화 (국세청 협업)

개선내용

▶ 2ℓ로 제한하던 맥걸리 판매용기 규제를 10ℓ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수출주류와 납세증지를 첨부한 맥걸리에 대해서는 용량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기대효과

▶ 판매용기에 대한 규제 완화로 포장·물류비용이 감축되고, 대용량 맥걸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충족 등을 통해 맥걸리 유통·소비 활성화 기대

- ▣ 고객 수요에 부응한 맥걸리 유통·소비단계에서의 판매형태 다양화를 통해 대용량 취급으로 제조업체의 판매원가 절감, 주점 등의 맥걸리 판매비용 절감 등 기대



농담(農談) 특특(talk talk)

기존에는 500ml 및 750ml 등 개별병으로 맥걸리를 납품하였으나, 10ℓ의 대형맥걸리 용기로 맥걸리전문점 및 지역외식 업체에 납품할 수 있게되어 용기제작비, 운임 등 제조비용이 절감되고, 가격인하 효과도 있어 맥걸리 주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

개선내용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지정요건
 - 지구당 연간매출액(40억원 이상) 또는 연간식재료 구매액(10억원 이상)기준을 삭제하고 지구내 외식 업체 수(20개소 이상) 기준으로 대체
 - 외식관련 자격증 소지 외식업소 비율 : 70% → 40%로 완화
- 외식업 사업자 단체 설립시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를 가진 전국조직이어야 한다는 규제는 폐지

기대효과

▶ 우수 외식업 지구가 확대됨으로써 지역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음식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국내산 우수 농산물 소비가 촉진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우수 외식산업지구 신청 가능 지구 : 현행 13개소 → 40개소까지 확대 가능
 - ※ 참고. 2014년까지 우수 외식업 지구 총 13개소
 - ('12년) 전주(한옥마을), 대구(들안길), 함양(건강100세 음식특구), 평창(호석메밀문화마을), 안산(땀이골)
 - ('13년) 부산(명륜1번가), 제주(용두암어영마을), 서귀포(아랑조을거리), 고창(선운산풍천장어거리)
 - ('14년) 대구(수밭골), 화성(대부도방아머리), 평창(오대산 산채마을), 인제(황태마을)

농담(農談) 토크(talk talk)

우수 외식업 지구가 확대되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의 활용법이 다양하게 발전되고 한우, 향태, 인삼, 메밀 등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음식관광업으로 진화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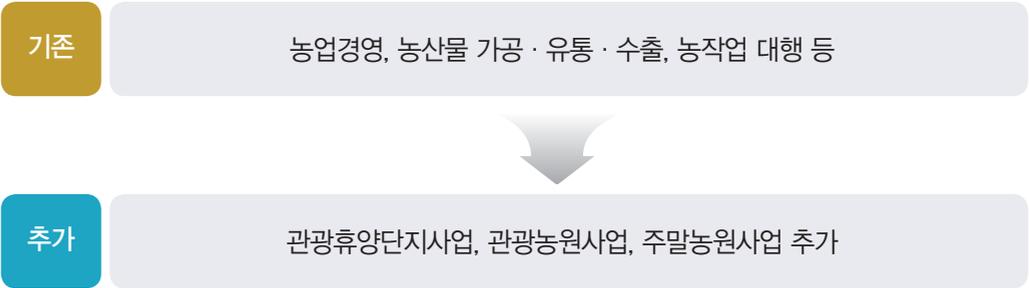
15

농업법인의 농촌관광사업 참여허용

개선내용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에 국한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농업법인 사업범위



기대효과

➤ 농업법인이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주체로 발돋움하고,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일자리 창출



농담(農談) 특특(talk talk)

청양 알프스마을의 경우, 얼음축제·조롱박축제 등 농촌체험·관광사업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2년 1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9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38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농업법인이 이러한 농촌관광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되어 6차산업이 발전되고,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 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칠갑산 도·농교류센터 황준환 대표

16 농촌민박 조식허용 및 농촌관광·휴양단지 사업 시설기준 완화

개선내용

▶ 농촌민박에서 아침식사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면적 (3ha→1.5ha) 및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농촌민박에서 별도의 음식업 신고 없이도 조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
 - ※ 농촌민박 : 전국 24,122개소('13년 기준)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규모 : 3ha 이상 → 1.5ha 이상으로 완화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시설기준
 -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을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경우 별도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기대효과

▶ 농촌민박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농촌민박 이용자 불편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

- 24천여개의 농촌민박사업에서 조식을 제공함에 따라 농가소득증대 효과 예상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의 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

농담(農談) 특특(talk talk)

농촌민박에서 조식제공이 허용됨에 따라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한편,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음식이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는, 새로운 음식산업을 창출할 기폭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

17

승마산업 규제개선

개선내용

➤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승마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지내 승마장 설치를 허용하고,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을 생산 또는 사육하는 목장에서는 초지내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초지가 무분별하게 감소되지 않도록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농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
- 말산업 특구지정 요건
 - (시설기준)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 →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 또는 승마시설이 20개소 이상
 - (생산규모)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 가능한 시설구비 → 생산·사육시설 이외에 이용가능한 시설을 구비해도 인정

기대효과

➤ 승마장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말산업 특구 중심으로 생산·육성·조련·이용 등 각 분야가 연계되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승마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확대

- ※ 승마인구 증가추세 : 회원수 ('10) 25천명 → ('13) 45천명
- ※ 승마장/승용마 : ('13) 366개/5.9두 → ('17) 500개소/10천두 확대, 일자리 3.5천개 창출
- ※ '17년까지 말산업 특구 5개소 지정계획

농담(農談) 토크(talk talk)

현재 초지에서 말을 20마리 키우고 있는데, 말을 키워서 파는데 한계가 있어 직접 승마시설을 운영해보고자 했으나 지자체로부터 전용허가도 받아야 하고 대체 초지조성비 부담도 있고 해서 승마시설 설치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승마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초지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초지에서도 목장처럼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지자체와 정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이제 규제가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계획을 잘짜서 정부의 승마시설 지원사업도 신청하고, 최근에 배출된 승마 전문인력도 채용해서 제대로된 말 체험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 제주에서 말사육농장을 운영하는 고00씨

18 6차산업 발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정 제도 도입

개선내용

➤ 각종 인허가 절차를 One-Stop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사업간 통합·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각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 절차를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에서는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 일련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완화하고, 행정절차는 one-stop으로 처리



기대효과

➤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개선 등으로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발전 촉진

기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별도사업 추진 - 각종 규제에 따른 투자 및 산업발전 한계 - 관련 사업의 개별적 추진으로 투자 효과 저조 -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를 지정, 통합 처리 -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간 연계 및 종합적 추진 - 사업간 통합·연계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 -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One-stop 신속 처리

농담(農談) 특특(talk talk)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의 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규제완화 특례 등을 적용으로 제조 가공에서 체험·관광으로 사업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소규모 장류업체가 집적(42개 업체)된 순창군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개발구상 〉



조성 이전	조성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상 제조업만 가능하여 숙박·음식업 미허용, - 3차산업과 연계 미흡 	<p>규제완화를 통해 민박, 식당, 편의시설 진입을 허용하여 체류형 외식·체험·관광 등 6차산업 활성화</p>

19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합리화 (국토부 협업)

개선내용

▶ 하천구역 내에서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및 하천 점용허가 이중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구역 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시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고, 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및 허가수수료 납부 면제

기대효과

- 하천구역 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에 관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용자의 비용 부담 완화
 - 목적 외 사용 중인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252개 중 하천구역 내에 설치된 100여개 이상의 저수지에서의 하천 점용료 면제 효과
 - ※ 농어촌 공사 관리 저수지 전체 3,372개 중 하천구역 내에 위치한 저수지는 1,277개(38%)
- 저수지, 담수호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낚시, 요트, 태양광 발전 등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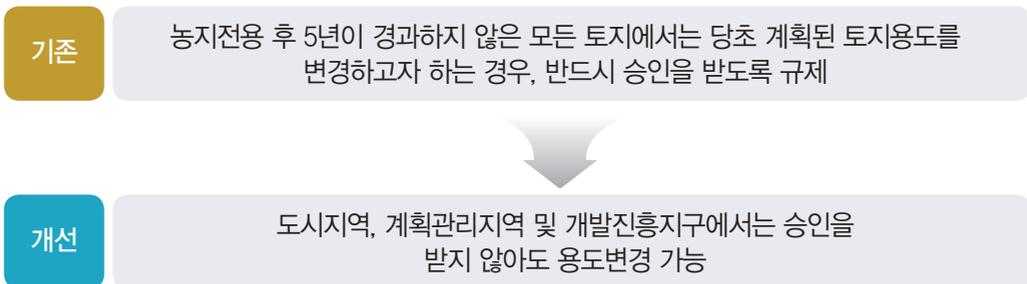
농담(農談) 토크(talk talk)

기존에는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구역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시 목적 외 사용 승인과 하천 점용허가를 모두 요구하여 사용자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하천 점용허가를 의제 처리하고, 하천 점용료 징수 면제로 하천구역 내 농업 생산기반시설 사용자의 이중부담 완화 및 행정비용 절감,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0 도시지역 등에서 농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 규제 완화

개선내용

-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농지전용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별도의 승인없이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다만, 농지보전부담금 비감면 시설 또는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참고) 용도변경 승인 제도 : 농지전용 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기대효과

-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용도변경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가능

※ 현행 용도변경관련 행정절차 및 비용

(절차) 용도변경 신청서(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첨부) 작성(신청인) → 접수(시·군·구) → 심사 → 결정 → 승인서 발급(처리기간 10일)

(비용) 수수료 5천원/건, 기타 인·허가 대행 용역비

농담(農談) 토크(talk talk)

2013년 1월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를 전용 허가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매점”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주변에 동종 업소가 많이 생겨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업종 변경을 고민하던 중, 2014.12.30일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 절차 없이 “소매점”을 “음식점”으로 신속히 변경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토지활용도를 높히게 되었습니다.

-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A씨는





III.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 활성화

- 21) 귀농·귀촌자의 경제활동 자금지원 규제 합리화
- 22) 농촌주택건축 입지규제 완화 및 자금지원 확대
- 23) 농촌주택단지조성 참여제한 완화
- 24) 고령농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 등 규제완화

21 귀농·귀촌자의 경제활동 자금지원 규제 합리화 (금융위 협업)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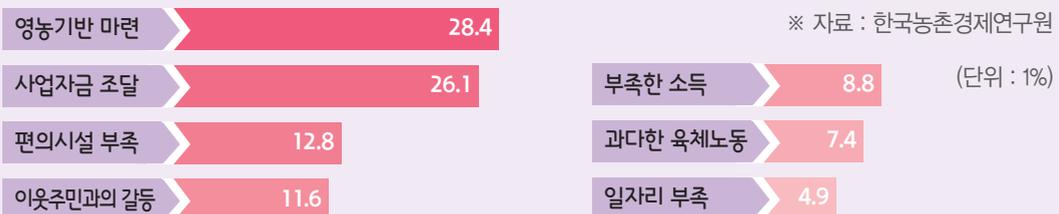
- ▶ 귀농·귀촌자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즉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운용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자금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예비 귀농인이 귀농 즉시 농업창업할 수 있도록 예비 귀농인에게도 농신보 이용 허용
 - 귀농인에 대한 비닐하우스 자금지원 요건 완화
 - 면적 : 2,000m² → 660m²
 - 농지 임차기간 요건 : 10년이상 → 5년이상
 -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업정책자금 이자율 인하 : 3% → 2%

기대효과

- ▶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여 정착 성공율을 제고하고, 창업활성화 도모

농담(農談) 토크(talk talk)

귀농·귀촌자의 농촌정착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영농기반 마련 및 사업자금 조달에 가장 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



22

농촌주택건축 입지규제 완화 및 자금지원 확대

개선내용

▶ 자투리 농지(2ha이하)에 대한 신규주택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건축 용자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입지규제 완화 :

신규 주택단지 조성시 자투리 농지(2ha 이하)를 활용하는 경우, 농림지역 비율 50%이내 제한 규제 미적용

※ 자투리농지 : 농업진흥지역 중 도로설치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농지

□ 주택건축 용자 한도 : 신축시 호당 6천만원 → 실제 건축비(감정평가액)의 70%까지 지원

□ 주택건축 용자 대상 : 자가주택 신축자(귀농·귀촌인, 농어촌 주민) → 임대주택 신축자까지 확대

기대효과

▶ 귀농·귀촌인의 주거지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및 자투리 농지 활용으로 난개발 방지 및 기반 조성비용 절감가능

농담(農談) 토크(talk talk)

기존에 신규마을 조성을 하려면 농림지역 비율이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귀농·귀촌인 마을을 조성하려면 비교적 값이 싼 산림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산지 훼손에 따른 환경파괴와 진입도로 개설, 경사지 보강 등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으나, 이번 규제개혁으로 도로변의 자투리 농지를 활용할 경우 농림지역 비율 제한이 폐지되어 귀농·귀촌인의 신규마을 조성시 산림환경도 보호하고 토목공사 등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 Y군 귀촌인 L씨

23

농촌주택단지조성 참여제한 완화

개선내용

➤ 귀농·귀촌인이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마을정비조합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여야만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던 것을 5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소규모 주택단지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주택마련 편의 제고

해외사례 1

▫ 러시아 다차(Da cha)

- 대도시 인근에 통나무로 지은 집과 텃밭이 딸린 주말농장(180~240평)으로, 따뜻한 5~10월에 주로 활용
- '70년~'80년초에 걸쳐 국가에서 무상으로 분배, 현재는 개인 간 거래 활발

해외사례 2

▫ 독일 클라인 가르텐(Klein garten)

- 텃밭과 오두막집으로 구성(30평 규모)되며, 주말동안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 체험
- 국공유지, 시유지 등의 부지를 민간 협회에 제공, 사용료·관리비는 개인부담

농담(農談) 토크(talk talk)

기존에는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여 농촌에 주거단지를 마련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개혁으로 5명 이상이면 정비조합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5명만 모이면 농촌에 주거단지를 손쉽게 마련할 수 있어 조합원 모집으로 늦어지게 되는 농촌으로의 이주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 C시 거주자 S씨

24 고령농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 등 규제완화

개선내용

▶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연령을 완화하고 가입비를 폐지하였습니다.

□ 가입연령 완화 :



□ 가입비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4.5.9)

기대효과

▶ 농촌에서 부부간의 연령차가 큰 경우 다문화가정 등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농지연금 가입부담 완화

□ 농지연금 가입자가 증가됨에 따라 고령농에 대한 국가의 복지비용부담 경감

※ 농지연금 신규가입 현황 :



※ '14년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월평균 농지연금 지급액 : 96만원

농담(農談) 특특(talk talk)

가입당시 배우자가 59세였기 때문에 기존 제도에 의해서는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매달 1,072천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시 5,889천원(농지가격 294백만원의 2%)의 가입비를 납부해야 했으나, 가입비 폐지로 경제적부담이 줄었습니다.

- 농지연금 가입자 전찬진(67세, 경기 양평)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규제개혁으로 연다!

인쇄일 2015년 1월

발행일 2015년 1월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획편집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전화 044-201-1363

디자인·인쇄 가현기획 031-423-6684 / 044-864-6684